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75

발의연월일: 2020. 12. 31.

발 의 자:이개호·윤재갑·이상직

유동수 • 홍성국 • 서삼석

위성곤 • 이원택 • 김민철

김승남 · 송갑석 · 김병기

의원(12인)

제안이유

'19.1월 PLS 전면시행 등으로 인해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무인 헬리콥터와 드론은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농약 방제 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불량·밀수농약 단속 등 유통 단계 농약의 검사·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한계 가 있으며,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인 헬리콥터 및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국내 등록증을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용 농약도 국내 판매용 농약에 준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하지만 국내 등 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잔류성, 약효·약해 등 일부 시험의 경우 수출 국의 기후나 농약 사용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효성이 없고, 수출국에서도 관련 시험을 진행하므로 수출 준비기간이 연장되 는 문제가 있음.

이에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용 농약도 별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정보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과 함께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약 유통검사 업무 소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 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위 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제31조).
- 나. 농약피해 관련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신설).
- 다. 방제업 중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안 제3조의2).

- 라.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수출을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8조의2).
- 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농약등의 안전관리 이외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의 판매·구매 이력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활용·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3).
- 바. 시험연구기관이 지정기준 미달 등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4.5개월이며, 이후 4년간 같은 항목 반복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현행화함(안 제17조의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 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 업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하 "국립 식물검역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 및 제4항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각각 "수출입식물방제업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의"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로,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등"이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를 각각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1개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개월"로,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

· 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을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기 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농약등관리"를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로,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소독 처리규정"을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판매하려면"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 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 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다만, 수출을 위한 보관· 진열은 가능하다.

제23조제1항 중 "방제업자와"를 "방제업자(제3조제1항 전단, 제3조제2항 전단 또는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1.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
- 2.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 3.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등[용기·포장의 크기가 50ml(g) 이하인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한 경우(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신의 영농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포장의 크기가 50ml(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정보"를 "판매정보(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정보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을 각각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으로한다.

제23조의3제1항제1호 중 "제조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물방제업"을 "제조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물방제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농약의 안전관리"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1. 농약등의 안전관리
-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의 판매·구매이력 확인
- ⑥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이용용도는 제5항 각 호를 따른다.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농약피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 1.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
- 3. 방제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 4.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의 자격이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정지된 사람
 -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의6(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

- 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 를 입은 사람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調停)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 적 지식의 제공, 농작물의 피해규모 산정 및 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 · 복사 · 제출 요구
 -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제1호 · 제2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① 조정위원회의 모든 분쟁조정절차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들 경우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⑨ 제2항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장"을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방제업자(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또는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제조·수입·보관·진열·판매"를 "방제업자가 제조·수입·보관·진열·판매"로하고, "장부"를 "기록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전단 중 "농촌진흥청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 중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을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판매업자에게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으로,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제17조

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7조제3항 또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1조제 2항"으로,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한 다.

제27조의2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으로,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제17조의2제1항,"을 "제17조의2제1항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제4항·제17 조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으로 한 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약등이나 원제에"를 "농약등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다)이나 원제에"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장, 시·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장 또는 시·도지사"로,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
- 2.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워

3.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농업 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

제32조제4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제16조제4항이나"를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5조에 따른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를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3조의7제4항제3호·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각각 "수출입식물방제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을 "농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각각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

흥청장,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 장"으로 한다.

- 8. 제23조의7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9. 제23조의7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 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
- 10. 제23조의7제5항에 따른 선서를 한 후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의 2,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 개정 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1호 중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을 "농림축산식품부" 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
(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	제업등"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u>	<u> 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식물검역기관의 장(이하 "국립	
식물검역기관의 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제1항에 따른 <u>수출입식물방제</u>	수출입식물방제업등
<u>업</u>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u>의</u>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	
여야 한다.	
③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범위는	③ 수출입식물방제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④ 수출입식물방제업등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u>수</u>
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
<u>라</u>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
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제조업자등 또는 <u>수출입식물</u>
<u>방제업자가</u> 사망한 경우 그 상
속인
2. 제조업자등 또는 <u>수출입식물</u>
<u>방제업자가</u> 영업을 양도한 경
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
축인신문반제언자가 한변하 경

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u>수출</u> 입식물
	 방제업등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라
	 1수출입식물
	방제업자등이 방제업자등이
	 2수출입식물
	 방제업자등이
	 3
•	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u>제조업자등</u>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u>1개월</u>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촌진흥청장</u>, 시<u>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u>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출입식물방제
<u>업자등</u>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 • 원제업자 • 수입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
흥청장에게,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군수・구청
<u>장에게 1개월</u>
<u>신고</u>
<u>.</u>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u>수출입식물방제업</u>
<u>자등</u>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 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 · 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 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 흥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 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

제6조(폐업의 신고) ① 제조업자 제6조(폐업의 신고) ① 영업을 폐 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 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장관에게, 제조업자 원제업자 • 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 게, 판매업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신고-----.

- ② (현행과 같음)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 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

과 같음)

- 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제13 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 3. 제14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 11. (생략)

-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u>농약등</u>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3. ~ 15. (생략)
- ② (생 략)
- ③ <u>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u> <u>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1. ~ 2. (현행과 같음)
3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
4. ~ 11. (현행과 같음)
12
또는 원제의 관리
13.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
입식물방제업자등이

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2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u>국립</u> 식물검역기관의 <u>장</u>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 검역소독 처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7. (생략)
- ④ (생 략)
-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u>판매하려면</u>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
 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생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1. ~ 4. (현행과 같음)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1. ~ 4. (현행과 같음)
축산식품부장관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u>농림</u>
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축산식품부장관
규정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
6.·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u> 규정</u>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국내에서 판매하려면 2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6. • 7. (현행과 같음)
<u>국내에서 판매하려면</u>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u>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u>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u>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u>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저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 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페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8조제1항, <u>제17조제1항</u> 또 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

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 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 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를 준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 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 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 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1. -----<u>제8조의2제1항 전</u>단, 제17조제1항-----

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② (생략)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저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u>⑤</u> (생 략)

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험연 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u>1</u>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2
<u>제8조의2제1항</u>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
② (현행과 같음)
세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
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
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세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刊工 6) ①
<u>6</u>
개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③ (생략)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제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제조 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 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 5. (생략)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 1. (생략)
-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u>제1</u>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을 한 농약. 다만, 수출을 위
한 보관·진열은 가능하다.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

17조의2제4	항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	한다)이	네 따라
직권에 의혀	하여 등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 워져	લી	

3. · 4. (생략)

③ • ④ (생 략)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등) ① <u>방제업자와</u>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한다.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촌 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 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u>ॅठ</u> ो
3.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u>방제업자(제3조제1항 전</u>
단, 제3조제2항 전단 또는 제3
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
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
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 ③ ④ (생 략)
- ⑤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⑥ <u>농촌진흥청장</u>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23조의2(판매·구매 정보의 기 제 록 및 보존 등) ① 제조업자· 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 물방제업자는 농약등[용기·포 장의 크기가 50ml(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을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u>
1.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
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
록되지 아니한 농약등
2.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
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3.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u>을 한 농약</u>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⑦ (현행과 같음)
]23조의2(판매·구매 정보의 기
록 및 보존 등) ① 제조업자ㆍ
수입업자·판매업자가 농약등
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
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
한 경우에는

판매한 경우(수출입식물방제업 자의 경우 사용한 경우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 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 제업자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이름·주소· 연락처
- 2. 농약등의 품목명·수량 등 <u>판매정보</u>

3. (생략)

- ②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 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기록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 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 ③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

<u>다만, 자신의 영</u>
<u>농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u>
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포
<u>장의 크기가 50ml(g) 이하인</u>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
(수출입식물
방제업자등 방제업자등
2
판매정보(수출입식물방제업자
등의 경우 사용정보를 말한
<u>다)</u>
<u> </u>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저구축·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농약 <u>제조업·수입업·판매</u> <u>업·수출입식물방제업</u>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2. ~ 6.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다.

<<u>신</u> 설>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1 제조업·수입업·판매
업·수출입식물방제업등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5
<u>.</u>
1. 농약등의 안전관리
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진정지분제도 도양에 따르 노

<u><신 설></u>

⑥ (생략)

① 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생략)

<신 설>

<u>약의 판매·구매이덕 확인</u>	
⑥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천	행
하는 기관의 장은 농약안전기	정
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합	
업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기	
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9	
다. 이 경우 농약안전정보시	
템을 통한 정보의 이용 용도는	
제5항 각 호를 따른다.	_

<u>®</u>	제7형	<u></u> 하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 회의 설치 등) ① 농약으로 인 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농약피해"라 한다) 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1.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
- 3. 방제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또 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 등을 사용한 경우
- 4.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 ③ 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 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 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신 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 로 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 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의 자격이 법

 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정지된 사람
-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23조의6(위원의 제착·회피· 기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 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신 설>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 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 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제 척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 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신 설>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 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 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
 약피해를 입은 사람은 조정위
 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 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調 停)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 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 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작물의 피해규모 산정 및 분 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 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

 구
-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 입·조사
-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제1호· 제2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 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 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제4호에 따른 출입· 조사 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 ① 조정위원회의 모든 분쟁조 정절차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 별 도의 비용이 들 경우 당사자에 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⑨ 제2항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 저 자재의 검사 등) ① 농촌진흥 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군수 · 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 역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제조업자 · 원제업자 ·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방 제업자(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또는 제3조의2제1항 전단 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 는 자를 포함한다)가제조 • 수 입 · 보관 · 진열 · 판매 또는 사 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 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장 부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하 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 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u>농촌진흥청장</u>은 출하된 농 약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

데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검사 등)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u>한다) 또는</u>
<u>시장·군수·구청장</u>
<u>방제업자가 제조·수입·</u>
보관·진열·판매
기록정보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농약등 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 ⑤ (생 략)
-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 른 해당 위반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농약 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 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비용은 제5항에 따른 해 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 ⑦ (생략)

<u><신</u>설>

⑧ (생 략)

제25조(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 제25조(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 에 관한 보고 등) 농촌진흥청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u> 농촌진흥청장</u>	
·	

- ⑦ (현행과 같음)
- ⑧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 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 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에 관한 보고 등) ① 농림축산 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 업자 · 원제업자 · 수입업자 · 판 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자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 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 · 시설 · 장비 등에 대하여 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 제26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 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u>자등</u>	또는	수출	입식·	물빙	제(업자
등						
				할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 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 흥청장은 제조업자 ·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은 판매업자에게 기준 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ㆍ시 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 완을 명할 수 있다.

음)

1. 제8조제1항, 제11조제<u>2항(제</u> 1. -----<u>제8조의2제1항</u>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 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 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2 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받은 경 우

2. 제14조제1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 7조제3항,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한 등록 취소, 변경등록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② ~ ④ (생 략)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 제 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11 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2 <u>제8조의2제1항</u> <u>후단, 제16조제4항</u>
(제8
조의2제1항 후단, 제17조제3
<u>항 또는</u>
② ~ ④ (현행과 같음)
27조(제출 자료의 보호) ①
<u>제8</u>
조의2제1항 후단, 제11조제2항
<u>제8조의2제1항 후</u>
단, 제16조제4항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 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27조의2(신고포상금) ① <u>농촌진</u> <u>흥청장</u>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 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8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생략)
-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 3. (생략)

<u>-</u>
<u>.</u>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신고포상금) ① 농림축
<u>산식품부장관</u>
· ② (현행과 같음)
(2) (연행가 실금)
제2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수출</u>

- 2. ----- <u>수출</u> <u>입식물방제업등</u>----
- 3. (현행과 같음)

- 4. 제8조제1항, <u>제11조제2항(제</u> 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 항(<u>제16조제4항</u>,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 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2 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 5. ~ 7. (생략)
- ② (생략)
- ③ 제8조제2항, 제16조제2항(제 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 2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원제 업자의 의뢰를 받아 약해·약 효·독성 또는 잔류성 시험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생략)

제29조(청문) <u>농촌진흥청장, 시장</u> 제 <u>•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u> <u>검역기관의 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4 <u>제8조의2제1항</u>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
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
<u>제8조의2제1항</u>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의2제1항 또는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현행과 같음)
29조(청문) <u>농림축산식품부장</u>
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
<u>군수·구청장</u>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생 략)
-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3. (생략)
-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 우 그 농약등이나 원제에 대하 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 1. 2. (생 략)
 - ②·③ (생 략)
- 설>

<신 설>

- 1. (현행과 같음)
- 2. 제14조(제16조제4항·제17조 2.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
 - 3. (현행과 같음)

제30조(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제30조(적용 배제) ① ------

----농약등(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 다)이나 원제에----. ----

----.

- 1. · 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신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 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업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하는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 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원 의제) 제17조의4제1항에 따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 는 시 · 도지사에게 재위임하거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 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 <u>장 또는 시·도지사</u>------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농 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 직원과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 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농업기 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2조(벌칙) (현행과 같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3조제1항 전단, 제2 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 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 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 1.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
- 2.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3.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 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 원

1.	~	3.	(현	행과	같	음)		
4.								
_								- — —
_						제82	준의;	2제
1	항	전	[단,	제1	6조	제1힝	- -	- – –
_								- – –

따른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u>제1</u> 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하거 나 회수·폐기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5의2. ~ 8. (생략)

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제 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10. · 11. (생략)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2항(제16조제4항이 나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 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u>利</u> 8
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
<u> </u>
5의2. ~ 8. (현행과 같음)
5의2. ~ 8. (연영과 실금) 9
J.
수출입식물방제업
자등
10.・11.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현행과 같음)
1(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2. (성	랭 략)
<신	설>

- 3.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 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 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자
 - 2.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 하여 <u>수출입식물방제업</u>의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한 자
 - 3. (생략)

2.	(현행과	같음)
0	-1) OO -7 A	17-114-

3.	저	23	조:	의7	'제	4 [†]	낭저	33	<u>-</u>	제4	1호
0	케	따	른	조	정	위	원.	회으] ද	기원	[의
	출 (입.	<i>조</i>	:사	•	열	람	또	는	복	-사
<u>.</u>	를	정	당	한	0]	유	어	(0)	거	부	또
<u> 1</u>	=	7]	피	하기	42	}	방	해ㅎ	누는	항	위
1	를	한	ス	<u>-</u>							

<u>4</u> .	<u>제2</u>	5조차	1항	베따	<u>는</u> -		
-							
_							
-							
_						_	

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 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140조(과대로) ① (현해과 가우)

1.	
	수출입식물방제업등
2.	
	수출입식물방제업등

3. (현행과 같음)

-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4. ----록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사용약----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략)
-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 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제조업 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u><신 설></u>

<신 설>

아는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u>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u>
7
8. 제23조의7제4항제1호를 위반
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2회
<u>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u> <u>한 자</u>
9. 제23조의7제4항제3호를 위반 하여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u>농촌진흥청장, 국립식</u> 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다.

서·물건을 제출한 자
10. 제23조의7제5항에 따른 선
서를 한 후 거짓으로 진술 또
는 감정을 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 농촌진흥청장</u>